

구미시 명상체험관 운영 조례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8. 5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시민과 공무원이 명상과 수련을 통해 인간본연의 창조성을 회복하고 긍정적·창의적인 사고 및 정서함양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시민과 공무원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고자 구미시 명상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명상체험에 관한 사항과 적용범위(안 제3조)
- 명상의 종류(안 제4조)
 - 자연명상체험, 이미지 및 릴렉스 명상체험
 - 디톡스 명상체험 자세 & 좌선 명상체험
- 명상체험관의 관리(안 제5조)
 - 정책혁신담당관실
- 명상체험관 이용시간(안 제7조)
 - 하절기는 09:00 ~ 21:30
 - 동절기는 09:00 ~ 20:30
 - 토요일은 09:00 ~ 18:00
- 명상체험관 이용의 제한(안 제8조)
 - 음주자, 정신이상자, 전염병질환자, 7세 미만의 어린이 등
-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분실, 훼손 또는 파손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함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명상체험관 시설 개요
- 장 소 : 별관1청사. 1층
- 면 적 : 142m²
- 사 업 비 : 1억6천9백만원
- 명상콘텐츠현황
 - 홀 & 대기 공간
 - 이미지 & 릴렉스명상 체험
 - 자세 & 좌선 명상체험
 - 자연명상 체험
 - 디톡스명상 체험
 - 탈의실(남·여) 및 기타

구미시 명상체험관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청사내 구미시 명상체험관(이하 “명상체험관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명상체험관은 구미시 송정동 50번지 구미시청 별관1청사 안에 둔다.

제3조(적용범위) 명상체험관을 이용하는 구미시민과 구미시산하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명상의 종류) ① 명상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연 명상체험
2. 이미지 & 릴렉스 명상체험
3. 디톡스 명상체험
4. 자세 & 좌선 명상체험

제5조(관리책임 및 운영) ① 명상체험관은 정책혁신담당관 책임 하에 행정혁신담당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.

1. 시민 및 직원들의 명상공간으로서의 체험관
2. 명상체험관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및 비품
3. 명상체험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명상체험시설과 관련된 사항

② 명상체험관은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,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구미시민을 선발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명상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명상관련 유경험자를 우선 선발하여 관리한다.

③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복, 급량비 등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개관 및 휴관) ① 명상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일반시민 및 공무원이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명상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
1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한다.
2.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제7조(이용시간) 명상체험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
1. 하절기는 09:00 ~ 21:30
2. 동절기는 09:00 ~ 20:30
3. 토요일은 09:00 ~ 18:00

제8조(입장제한)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 음주자, 고성방가로 소란을 피우는 자
2. 정신이상자 및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자
3. 7세 미만의 어린이
4. 그 밖에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와 타인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자

제9조(사용료) 명상체험관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.

제10조(사용자의 의무) ① 사용자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분실, 훼손 또는 파손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명상체험관에서 사용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